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	--

제안년월일 : 2010. 4. 16.
제안자 : 복지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기준에 징역형, 벌금형의 포상기준을 신설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가. “환경오염행위 등을 행정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를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로 함.
(안 제2조)
- 나.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부 소관법률(이하 ” 환경관리법 “이라 한다)을” 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등의 환경 관련 법률을” 로 함. (안 제3조제1항)
- 다.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처리 대장” 을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처리대장” 으로 함. (안 제4조)
- 라. “별표1” 을 “별표” 로 하고, “경찰공무원이” 를 “경찰공무원 등이” 로 하며, “법령에” 를 “법령 등에” 로 하고, “동일인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의 합계는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를 “동일인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의 합계는 별표의 제1호의 기준 중 징역형, 벌금형을 제외하고,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로 하며, “별표1의 4호”를 “별표의 제5호”로 함. (안 제6조)

마.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고포상심사위원회”로 하고,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업무 관련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소관국 과장급으로”를 “주민생활국장이 되고, 위원은 청소행정과장, 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 및 치수방재과장이”로 하며, “팀장”을 “담당팀장”으로 함. (안 제7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등 환경부 소관법률을 위반하는”을 “등에 따른”으로 한다.

안 제2조 중 “환경오염행위 등을 행정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를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로 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부 소관법률(이하 “환경관리법”이라 한다)을”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등의 환경관련 법률을”로 한다.

안 제4조 중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처리 대장”을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 처리대장”으로 한다.

안 제6조 제1항 각호 외의 본문 중 “별표1”을 “별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찰공무원이”를 “경찰공무원 등이”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법령에”를 “법령 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1의 4호”를 “별표의 제5호”로 한다.

② 동일인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의 합계는 별표의 제1호의 기준 중 징역형, 벌금형을 제외하고,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안 제7조제1항 중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고포상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업무 관련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소관국 과장급으로”를 “주민생활국장이 되고, 위원은 청소행정과장, 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 및 치수방재과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팀장”을 “담당팀장”으로 한다.

안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기준(제6조 관련)

1. 징역형, 벌금형의 포상기준

구 분		포 상 금	비 고
징역형 (금고형)	2년 이상	- 300만원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2년 미만	- 200만원	
벌 금 형		- 벌금액의 100분의 10 단,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선고유예		- 20만원	
기소유예		- 10만원	

2.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가. 지급률 : 부과되는 과태료금액의 10퍼센트

나. 지급액 : 최고 10만원, 최저 3만원(원안 제1호와 같음)

3. 배출부과금·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신고의 포상기준

가. 지급률 : 부과되는 배출부과금·과징금 등 부과액의 10퍼센트

나. 지급액 : 최고 50만원, 최저 3만원

4.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구 분	포 상 금
경고·시정명령·개선명령 등의 처분에 해당하는 신고	5만원
조업정지·사용중지 등의 처분에 해당하는 신고	10만원
허가취소·폐쇄명령 등의 처분에 해당하는 신고	20만원

5. 기타 환경보전에 기여한 신고 등에 해당되는 포상금 지급기준

- 가.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였으나, 현지조사를 한 결과 위법사항으로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라도 신고가 그 밖에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나 생태계 훼손행위 등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1만원 상당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나. 매연 과다발산차량 신고의 경우 월(해당 월 초일부터 해당 월 말일 기준) 신고대수가 5대 이상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5,000원 상당, 10대 이상인 경우는 10대당 1만원 상당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다. 위 경우의 포상금은 1명당 연간 1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6. 중복된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 가. 동일한 신고에 대하여 포상기준이 둘 이상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 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공동신고인 경우는 공동 신고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대표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인원수대로 포상금을 균등 배분하여 지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 행위 신고 포상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부 소관법률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제보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 등을 행정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p> <p>제3조(신고대상 및 방법) ① 신고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부 소관법률(이하 "환경관련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환경오염행위 또는 환경훼손행위로,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p> <p>② (생략)</p>	<p>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 행위 신고 포상 조례</p> <p>제1조(목적) ----- ----- ----- ----- ----- 등에 따른 ----- ----- ----- -----.</p> <p>제2조(적용범위) ----- ----- -----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p> <p>제3조(신고대상 및 방법) ①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등의 환경관련 법률을 ----- ----- ----- ----- ----- ----- -----.</p> <p>② (원안과 같음)</p>

원 안	수 정 안
<p>제4조(접수 및 처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u>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한다.</u></p> <p>제6조(포상) ①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u>별표 1</u>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 또는 상품권(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 포함) 및 <u>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u> 2. ~ 4. (생략) 5. 다른 <u>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u> 6. ~ 9. (생략) <p>② <u>동일인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의 합계는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u></p> <p>③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u>환경오염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4호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u></p>	<p>제4조(접수 및 처리) ----- ----- ----- -----<u>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처리대장</u>----- ----- -----</p> <p>제6조(포상) ①----- ----- -----<u>별표</u>-----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u>경찰공무원 등이</u>----- ----- 2. ~ 4. (원안과 같음) 5. --- <u>법령 등에</u> ----- ----- 6. ~ 9. (원안과 같음) <p>② <u>동일인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의 합계는 별표의 제1호의 기준 중 징역형, 벌금형을 제외하고,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u></p> <p>③ ----- ----- ----- -----<u>별표의 제5호</u>----- -----</p>

원 안	수 정 안
<p>제7조(신고포상심사위원회 구성 등)</p> <p>①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자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u>신고포상심사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생략)</p> <p>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u>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업무 관련 소관국장이 되고</u>, 위원은 <u>소관국 과장급으로</u> 되며,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p> <p>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u>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업무 팀장</u>이 된다.</p> <p>⑤ ~ ⑥ (생략)</p>	<p>제7조(신고포상심사위원회 구성 등)</p> <p>① ----- -----<u>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고포상심사위원회</u>-----.</p> <p>② (원안과 같음)</p> <p>③ ----- <u>주민생활국장이 되고</u>, 위원은 <u>청소행정과장, 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 및 치수방재과장</u>이 ----- -----.</p> <p>④ ----- ----- ----- <u>담당팀장</u> -----.</p> <p>⑤ ~ ⑥ (원안과 같음)</p>

원 안	수 정 안													
<p>[별표 1] <u>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기준(제6조 관련)</u></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1. (생략) 2. 배출부과금·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신고의 포상기준 가. 지급률 : 부과되는 배출부과금·과징금의 <u>징수교부금의 10퍼센트</u> 나. (생략) 3. ~ 4. (생략) 5. 중복된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가. (생략) 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인에게 <u>상급</u>을 지급하고, 공동신고인 경우는 공동 신고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대표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인원수대로 포상금을 균등 배분하여 지급한다.</p>	<p>[별표] <u>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기준(제6조 관련)</u></p> <p>1. 징역형, 벌금형의 포상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60%;">포 상 금</th> <th style="width: 25%;">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징역형 (금고형)</td> <td>2년 이상 - 300만원</td> <td rowspan="5">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td> </tr> <tr> <td>2년 미만 - 200만원</td> </tr> <tr> <td>벌 금 형</td> <td>- 벌금액의 100분의 10 단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td> </tr> <tr> <td>신고유예</td> <td>- 20만원</td> </tr> <tr> <td>기소유예</td> <td>- 10만원</td> </tr> </tbody> </table> <p>2. (원안 제1호와 같음) 3. 배출부과금·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신고의 포상기준 가. 지급률 : 부과되는 배출부과금·과징금 등 부과액의 10퍼센트 나. (원안 제2호 나와 같음) 4. ~ 5. (원안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6. 중복된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가. (원안 제5호 가와 같음) 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인에게 <u>포상금</u>을 지급하고, 공동신고인 경우는 공동 신고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대표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인원수대로 포상금을 균등 배분하여 지급한다.</p>	구분	포 상 금	비 고	징역형 (금고형)	2년 이상 - 300만원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2년 미만 - 200만원	벌 금 형	- 벌금액의 100분의 10 단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신고유예	- 20만원	기소유예	- 10만원
구분	포 상 금	비 고												
징역형 (금고형)	2년 이상 - 300만원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2년 미만 - 200만원													
벌 금 형	- 벌금액의 100분의 10 단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신고유예	- 20만원													
기소유예	- 10만원													